

**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(역모기지론용) 개정대비표**

**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6년 06월 15일**

**2. 개정내용**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조 (신탁목적 및 용어의 정의)</p> <p>②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"수익자"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생전수익자로 지정된 자와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총칭하되,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생전수익자를 의미하고,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를 의미한다.</p> <p>가. "생전수익자"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 전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자로서 위탁자(역모기지론약정상 채무자)를 의미한다.</p> <p>나. "사후수익자"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 시점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자로서 역모기지론약정상 채무인수인을 <b>말한다.</b></p> <p>3. "역모기지론약정"이라 함은 채무자로서 위탁자, 채무인수인으로서 사후수익자 및 채권자로서 우선수익자 사이에 [        ]년 [    ]월 [    ]일 체결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(역모기지론) 약정서를 <b>말하며</b>, 이에 대한 변경, 수정 및 추가계약을 포함한다.</p> <p>4. "우선수익자"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자로서 역모기지론약정상 채권자인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<b>말한다.</b></p> <p>5. &lt;생략&gt;</p> <p>6. "KB시세"라 함은 (주)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를 <b>말한다.</b></p>	<p>제1조 (신탁목적 및 용어의 정의)</p> <p>②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.</p> <p>1. &lt;좌동&gt;</p> <p>2. "수익자"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생전수익자로 지정된 자와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총칭하되,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생전수익자를 의미하고,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를 의미한다.</p> <p>가. "생전수익자"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 전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자로서 위탁자(역모기지론약정상 채무자)를 의미한다.</p> <p>나. "사후수익자"라 함은 위탁자의 사망 시점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갖는 자로서 역모기지론약정상 채무인수인을 <b>의미한다.</b></p> <p>3. "역모기지론약정"이라 함은 채무자로서 위탁자, 채무인수인으로서 사후수익자 및 채권자로서 우선수익자 사이에 [        ]년 [    ]월 [    ]일 체결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(역모기지론) 약정서를 <b>의미하며</b>, 이에 대한 변경, 수정 및 추가계약을 포함한다.</p> <p>4. "우선수익자"라 함은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자로서 역모기지론약정상 채권자인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<b>의미한다.</b></p> <p>5. &lt;좌동&gt;</p> <p>6. "KB시세"라 함은 (주)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를 <b>의미한다.</b></p>	<p>자구 수정(서술어 통일)</p> <p>자구 수정(서술어 통일)</p> <p>자구 수정(서술어 통일)</p> <p>자구 수정(서술어 통일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6조 (우선수익자 지정 및 우선수익권의 내용)</p> <p>④ (i)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및 (ii) 역모기지론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방식 변경(담보제공방식을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)과 관련하여 위탁자(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)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이 <b>신탁의</b>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.</p>	<p>제6조 (우선수익자 지정 및 우선수익권의 내용)</p> <p>④ (i)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및 (ii) 역모기지론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방식 변경(담보제공방식을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)과 관련하여 위탁자(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)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이 <b>신탁계약의</b>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.</p>	용어 통일
<p>제7조 (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의 내용)</p> <p>③ 수익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가진다.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생전수익자가 본항의 권리를 가지고,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(당시 생존하고 있는) 사후수익자가 본항의 권리를 갖는다.</p> <p>1.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며 신탁부동산을 사용·수익할 권리</p> <p>2. (수익자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) 이 <b>신탁이</b> 종료된 경우 제16조에 따라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</p>	<p>제7조 (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의 내용)</p> <p>③ 수익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가진다.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사망 전에는 생전수익자가 본항의 권리를 가지고, 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(당시 생존하고 있는) 사후수익자가 본항의 권리를 갖는다.</p> <p>1.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며 신탁부동산을 사용·수익할 권리</p> <p>2. (수익자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) 이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된 경우 제16조에 따라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</p>	용어 통일
<p>제8조 (귀속권리자 지정 등)</p> <p>⑦ 귀속권리자의 지위 및 귀속비율(귀속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)은 이 <b>신탁이</b>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. 다만, 귀속권리자 지위의 포기는 잔여 신탁재산의 교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.</p> <p>⑧ 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 다만, <b>신탁 종료</b> 후부터 잔여 신탁재산 교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귀속권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.</p>	<p>제8조 (귀속권리자 지정 등)</p> <p>⑦ 귀속권리자의 지위 및 귀속비율(귀속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)은 이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. 다만, 귀속권리자 지위의 포기는 잔여 신탁재산의 교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.</p> <p>⑧ 이 신탁계약에 따른 귀속권리자의 지위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 다만, <b>신탁계약 종료</b> 후부터 잔여 신탁재산 교부가 완료되기 전까지 귀속권리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.</p>	용어 통일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1조 (유지관리)</p> <p>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<b>신탁 종료</b> 후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,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 (유지관리)</p> <p>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기간 중 또는 <b>신탁계약</b>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그 하자를 원인으로 신탁재산,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	용어 통일
<p>제16조 (신탁계약의 종료 및 잔여 신탁재산의 교부 등)</p> <p>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. 이 경우 잔여 신탁재산이 본조 제3항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1~5. &lt;생략&gt;</p> <p>6. 역모기지론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방식 변경(담보제공방식을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)과 관련하여 위탁자(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)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이 <b>신탁의</b>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② <b>신탁종료</b> 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에 따른 수익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잔여재산 귀속자"라 함)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이미 통보한 사항은 최종계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이 <b>신탁이</b> 종료되는 시점에 위탁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: 생전수익자</p> <p>2. 위탁자의 사망 시점에서 사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 <b>신탁이</b> 종료되는 시점에 사후수익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(단, 위탁자의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사후수익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함) : 사후수익자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: 귀속권리자</p> <p>③ 잔여 신탁재산은 <b>신탁종료일</b>의 다음 영업일에 잔여재산 귀속자</p>	<p>제16조 (신탁계약의 종료 및 잔여 신탁재산의 교부 등)</p> <p>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. 이 경우 잔여 신탁재산이 본조 제3항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1~5. &lt;생략&gt;</p> <p>6. 역모기지론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제공방식 변경(담보제공방식을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)과 관련하여 위탁자(위탁자의 사망 후에는 사후수익자)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이 <b>신탁계약의</b>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② <b>신탁계약 종료</b> 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에 따른 수익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잔여재산 귀속자"라 함)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이미 통보한 사항은 최종계산서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이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되는 시점에 위탁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: 생전수익자</p> <p>2. 위탁자의 사망 시점에서 사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되는 시점에 사후수익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(단, 위탁자의 사망 후 사후수익자가 사후수익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함) : 사후수익자</p> <p>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: 귀속권리자</p> <p>③ 잔여 신탁재산은 <b>신탁계약 종료일</b>의 다음 영업일에 잔여재산 귀</p>	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에게 신탁계약서와 교환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시 다음 <b>각호</b>의 방법으로 잔여 신탁재산(<b>신탁종료시</b>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에 따른 수익을 지급한 이후의 잔여 신탁재산을 <b>말한다</b>)을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신탁계약의 종료 시 신탁부동산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)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인도한다. 이 경우 위 등기에 <b>소유되는</b> 제비용은 잔여재산 귀속자가 부담한다.</p> <p>2. <b>신탁종료</b>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.</p> <p>3.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.</p>	<p>속자에게 신탁계약서와 교환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④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시 다음 <b>각 호</b>의 방법으로 잔여 신탁재산(<b>신탁계약 종료 시</b> 우선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에 따른 수익을 지급한 이후의 잔여 신탁재산을 <b>의미한다</b>)을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신탁계약의 종료 시 신탁부동산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)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인도한다. 이 경우 위 등기에 <b>소요되는</b> 제비용은 잔여재산 귀속자가 부담한다.</p> <p>2. <b>신탁계약 종료</b>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.</p> <p>3.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.</p>	<p>띄어쓰기 수정 용어 통일</p> <p>자구 수정(서술어 통일)</p> <p>오기 수정</p> <p>용어 통일</p>
<p>제19조 (신고사항)</p> <p>① 위탁자, 수익자, 귀속권리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<b>각호</b>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탁계약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</p> <p>2. 위탁자, 수익자, 귀속권리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, 성명,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</p> <p>3.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</p>	<p>제19조 (신고사항)</p> <p>① 위탁자, 수익자, 귀속권리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<b>각 호</b>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탁계약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</p> <p>2. 위탁자, 수익자, 귀속권리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, 성명,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</p> <p>3.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</p>	<p>띄어쓰기 수정</p>
<p><b>&lt;별첨 3&gt;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</b></p> <p>제1조 (처분시기)</p> <p>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.</p> <p>1. 역모기지론약정서상 대출실행 종료일이 도래한 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요청한 경우</p> <p>2. 역모기지론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기간이 조기종료되었으나 조기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받지 못하여 우선수익자가 <b>신탁부동산</b>이 처분 및 정산을 요청한 경우</p> <p>3.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하</p>	<p><b>&lt;별첨 3&gt;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</b></p> <p>제1조 (처분시기)</p> <p>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.</p> <p>1. 역모기지론약정서상 대출실행 종료일이 도래한 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요청한 경우</p> <p>2. 역모기지론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기간이 조기종료되었으나 조기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받지 못하여 우선수익자가 <b>신탁부동산의</b> 처분 및 정산을 요청한 경우</p> <p>3.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하</p>	<p>오기 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는 경우	는 경우	
<p data-bbox="174 204 878 233">&lt;별첨 4&gt; 신탁부동산 관리책임 주체와 범위에 관한 약정</p> <p data-bbox="107 248 515 277">제1조(수익자의 관리책임과 범위)</p> <p data-bbox="107 296 940 373">⑤ 신탁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에 의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<b>의무</b>.</p> <p data-bbox="107 434 582 462">제3조(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금지)</p> <p data-bbox="107 481 940 695">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전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 등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고,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<b>아니된다</b></p> <p data-bbox="107 756 636 785">제4조(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예외)</p> <p data-bbox="107 804 940 925">①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임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ol data-bbox="107 944 940 1295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수탁자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li> <li>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<b>한다</b></li> <li>임차인이 신탁부동산에 전입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게 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p data-bbox="107 1315 940 1481">②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제1항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이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이미 보관중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제1항 제3호의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볼 수 <b>있다</b></p>	<p data-bbox="1025 204 1729 233">&lt;별첨 4&gt; 신탁부동산 관리책임 주체와 범위에 관한 약정</p> <p data-bbox="967 248 1375 277">제1조(수익자의 관리책임과 범위)</p> <p data-bbox="967 296 1800 373">⑤ 신탁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에 의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<b>의무</b></p> <p data-bbox="967 434 1442 462">제3조(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금지)</p> <p data-bbox="967 481 1800 695">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전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 등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고, 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<b>아니된다</b>.</p> <p data-bbox="967 756 1496 785">제4조(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예외)</p> <p data-bbox="967 804 1800 925">①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임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ol data-bbox="967 944 1800 1295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탁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고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수탁자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li> <li>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<b>한다</b>.</li> <li>임차인이 신탁부동산에 전입하는 날까지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임차인이 직접 입금하게 하여야 한다.</li> </ol> <p data-bbox="967 1315 1800 1481">②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제1항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이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이미 보관중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서 제1항 제3호의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볼 수 <b>있다</b>.</p>	<p data-bbox="1823 341 1971 370">구두점 정비</p> <p data-bbox="1823 667 1971 695">구두점 정비</p> <p data-bbox="1823 1129 1971 1158">구두점 정비</p> <p data-bbox="1823 1455 1971 1484">구두점 정비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③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신탁부동산의 보존·유지·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조에 따라 <b>부담한다</b></p> <p>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제3항에 따른 신탁부동산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<b>있다</b></p>	<p>③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는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신탁부동산의 보존·유지·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조에 따라 <b>부담한다.</b></p> <p>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가 제3항에 따른 신탁부동산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사후수익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<b>있다.</b></p>	<p>구두점 정비</p> <p>구두점 정비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5&gt;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</b></p> <p>제1조(신탁보수)</p> <p>③ 본조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, 역모기지론약정상 담보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루어진 후, 위 담보주택이 속한 지역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·재개발사업 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져 역모기지론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<b>신탁이</b> 종료되고 위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재건축·재개발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공사 및 준공인가 완료되고 위탁자가 신축된(리모델링된)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따라 담보제공방식을 다시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본조에 따른 기본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5&gt; 신탁보수에 관한 약정</b></p> <p>제1조(신탁보수)</p> <p>③ 본조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, 역모기지론약정상 담보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이 이루어진 후, 위 담보주택이 속한 지역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·재개발사업 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져 역모기지론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되고 위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재건축·재개발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공사 및 준공인가 완료되고 위탁자가 신축된(리모델링된)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따라 담보제공방식을 다시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본조에 따른 기본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.</p>	<p>용어 통일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6&gt;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약정</b></p> <p>제3조 (<b>신탁종료</b> 시 신탁재산의 유보)</p> <p>①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(조세채무는 성립하였으나,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포함한다)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이 <b>신탁이</b> 종료된 경우,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본 계약 제16조 제2항의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교부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6&gt;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약정</b></p> <p>제3조 (<b>신탁계약 종료</b> 시 신탁재산의 유보)</p> <p>①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(조세채무는 성립하였으나,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포함한다)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이 <b>신탁계약이</b> 종료된 경우,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본 계약 제16조 제2항의 잔여재산 귀속자에게 교부한다.</p>	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7&gt; 기타 추가 약정사항</b></p> <p>제10조 (기타 신탁계약 본문에 대한 예외)</p> <p>① 신탁계약 본문 제13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 사무처리비용을 대지급한 경우 그 회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,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대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</p> <p>② 신탁계약 본문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는 <b>신탁종료시</b> 실시하기로 한다.</p> <p>③ 신탁계약 본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원시적 하자를 제외한 신탁기간 중 또는 <b>신탁종료</b> 후에 발생한 위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신탁부동산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,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탁부동산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별첨 7&gt; 기타 추가 약정사항</b></p> <p>제10조 (기타 신탁계약 본문에 대한 예외)</p> <p>① 신탁계약 본문 제13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 사무처리비용을 대지급한 경우 그 회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,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대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</p> <p>② 신탁계약 본문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는 <b>신탁계약 종료시</b> 실시하기로 한다.</p> <p>③ 신탁계약 본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원시적 하자를 제외한 신탁기간 중 또는 <b>신탁계약 종료</b> 후에 발생한 위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신탁부동산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,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탁부동산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.</p>	<p>용어 통일</p> <p>용어 통일</p>